# 대학 교수-학습 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제정 : 2018년 07월 16일

최근개정 : 2019년 01월 30일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칙 제4장, 제10조 ⑤항에 의거하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술지명칭)

본 학술지는 '대학 교수-학습 연구'라 칭하며, 대학 교수-학습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치)

본 대학 교수-학습 연구 사무실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사무국에 둔다.

## 제4조 (모집분야)

대학 교수-학습 전반에 관한 연구로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의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하계워크숍,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은 투고 할 수 있다.

## 제5조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해 6월 30일 / 12월 31일로 정한다.

	1호	2호
투고 마감일	4월 30일	10월 31일
발간일	6월 30일	12월 31일

## 제6조 (투고규정)

- ① 투고 원고는 대학 교수-학습 관련 학술논문으로 제한하며 타 논문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와 타 학술지에 기 발표 된 경우에는 투고할 수 없다.
- ② 투고 원고가 소정의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되는 경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와 본 학회가 공동으로, 전송 권은 본 학회에 귀속한다.

- ③ 논문 투고 시 '대학 교수-학습 연구' 게재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하여, '대학 교수-학습 연구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활용 동의서, 표절검사지를 함께 제출한다.
  - (※ 표절검사 비율은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논문 게재자는 공동연구 포함하여 호당 1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⑥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제7조 (게재확정논문)

- ①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제시된 양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은 기본 게재료 70,000원이며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추가 게재료 포함 140,000원 납부하고 논문의 첫장 하단에 지원관계를 기재한다.
  - (※ 연구자는 연구지원비 수혜 관련 기재에 대해 편집 1차 교정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기본 원고분량 15쪽(참고문헌포함)은 기본 게재료 70,000원을 납부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당 10,000원 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 5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 제8조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

- ① 논문 투고 시 6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를 하는 논문의 경우 심사료 2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다.
- ②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70,000원을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추가 게재료 포함 140,000원을 납부한다. (※ 단, 향후 등재후보지 등록 시 기본 원고분량 15쪽 초과 시 쪽당 1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 제9조 (표절)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인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3장 제9조(2007, 5)에 의 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 제10조 (편집위원회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임원진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임원진에서 승인한 10인 내외에서 편집부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은 전국적인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확인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편집위원회 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 영역에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대학교수-학습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심사 및 발간)

- ① 논문 발간은 6월 30일 / 12월 31일 연 총 2회이다.
- ② 투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각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 심사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난 학자로 위촉함)
- ③ 선정된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 논문주제의 명확성 및 독창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 연구문제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연구결론, 논의 및 제언의 객관성과 논리성
  -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 문장 기술의 논리적 전개 및 적절성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충실성
- ④ 심사결과는 3명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가 :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논문
- 수정 후 게재가 : 논문의 가치가 우수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사항을 저자에게 위임할 만한 논문

- 수정 후 재심 : 논문의 가치가 인정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상당한 정도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여부를 심사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
- 게재불가 : 논문의 수준이나 내용의 성격이 본 학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 ⑤ 3명의 논문심사 결과 내용은 최종 판정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안내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과 안내 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서와 함께 제출한다.
- ⑥ 투고자와 동일 근무지 소속인은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 ② 논문초록의 질적 평가 및 수정 전후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보류의 최종 심 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 ⑤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심사결과 미반영,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⑨ 논문 목차 순서는 논문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 ⑩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제13조 (효력발생시기)

본 규정은 11권 1호(2018년 9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8년 07월1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30일부터 시행한다.